

세무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3년 6월 pp.253~277
한국세무학회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및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에 미치는 영향

이만우*

<요 약>

국제회계기준(IFRS)이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회계 실무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 법인세회계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뀔에 따라 세무회계분야 연구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및 미국의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관련 연구흐름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회계의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와 실증연구를 분석함에 있어서 문헌적 연구방법을 위주로 진행한다.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인 공정가치회계는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세법개정안에는 후입선출법 및 정률법 적용 중단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과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른 세법개정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기준의 재평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차이가 확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무조정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 기간배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 이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손익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돼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이 회계상 법인세비용 및 유효법인세율 계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조화에 대한 연구도 강화돼야 한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과 연관성이 깊은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조세 문제와 FTA 운영에 있어 원산지 증명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재무회계, 세무회계, 법인세회계,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leemm@korea.ac.kr, 02-3290-1927

I. 서 론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로 줄여 부름)의 우리나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한 의무적용이 2011년부터 개시됐다. 이에 따라 재무회계는 물론 법인세 실무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당초 도입 초기의 심각한 혼란이 우려됐으나 학계, 감독기관, 유관단체의 유기적 협력과 충실한 준비로 안정적 정착률이 이뤄졌다. 미국과 일본이 도입 결정을 계속 지연시키며 엉거주춤한 상태인 가운데 유럽 등 IFRS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한 발 앞선 IFRS 도입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IFRS 운영주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전신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설립된 1973년에 영국 런던에서 출범했다. 초기에는 취약한 재정 및 인적 여건에서 구체적 규정 보다는 원칙에 대한 보고서 발간위주로 운영됐다. 이와 같은 초기의 운영경험은 원칙중심(principle-based) 기준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참여수준도 높아져 재단이사로 한국인이 선임된 이후 2012년 7월부터 한국인이 처음으로 5년 임기 IASB위원에 선임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IFRS는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서 공정가치(fair value)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지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지배권을 가진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가치회계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과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손익과 구분함으로써 손익의 외연을 넓히면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

IFRS에 따른 재무제표는 최초 도입연도 뿐만 아니라 계속 적용 기간에도 기업 간 또는 기간 간의 비교 목적으로는 종전의 규칙 중심 기준의 재무제표와 대비시킬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명확한 법규에 의한 처리를 중시하는 법인세 관련 세무회계(법인세회계)와의 충돌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입 초기의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도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의 개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 분야 연구의 동향과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세무 실무분야의 중요도를 감안해 세무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과 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흐름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최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이 폭넓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유효법인세율의 정확

한 측정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원산지 확인에 따른 관세 감면비율 계산에 있어서도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변동분의 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회계자료가 요구되는 제반 분야에서 제기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대해 세무분야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전체 5개장으로 구성된 본 연구에서는 제 I 장의 머리말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재무회계와 연관된 세무관련 분야 연구의 흐름을 미국과 한국의 기존 연구를 대비해 분석한다. 제 III 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의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분야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 IV 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추가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제 V 장에서 논문 내용의 요약과 함께 결론을 맺기로 한다.

II. 재무회계 관련 세무회계 분야의 기존 연구 검토

1. 연구흐름의 개요

세무관련 분야의 실증적 연구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은 Shackelford and Shevlin(2001)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됐다. 근래에 와서는 Hanlon and Heitzman(2010)이 세무회계 연구흐름을 업데이트해 새로 정리했으며, Graham et al.(2012)은 재무회계의 한 분야로서 법인세회계와 관련된 연구흐름을 정리했다. 세 논문의 분석결과를 집결하면 재무회계 관련 세무분야 연구흐름은 크게 인센티브 상충관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및 일치성, 법인세비용 관련 이익조정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법인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과세소득 변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관련 세법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실제 경험이 쌓인 한국의 연구가 독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 재무회계 관련 세무회계 연구의 주제별 국내외 동향

가. 인센티브 상충관계 연구

경영자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세무보고이익(과세소득)을 줄이거나 차후로 이연시키는 유인을 지닌다. 세무보고이익을 줄이는 과정에서 회계보고이익 감소가 수반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 기업이 채권자 및 고객 등과 맺는 계약 중 상당 부분은 회계보고이익을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 경영자의 승급, 연임 및 보상도 회계보고이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무보고이

익을 줄임에 따라 부수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과세이익을 줄이려는 세무보고 인센티브와 이익을 늘리려는 회계보고 인센티브 간에 상충(trade off) 문제는 세무분야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분야에서도 오랜 연구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서 후입선출법(LIFO)의 사용은 다양한 연구기회를 제공해 왔다. LIFO는 나중에 구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팔리고 결국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이 기말재고로 남는다는 원가흐름의 가정이다. 물가상승 국면에는 LIFO 적용은 낮은 기말재고액과 높은 매출 원가, 그리고 낮은 순이익과 낮은 법인세비용을 유발한다. 문제는 낮은 법인세 납부액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유발된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LIFO 선택이 회계보고이익의 감소로 인해 부정적 주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리한 현금흐름에 따른 효율적 시장가설에 배치되는 연구결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됐다. 이런 논란은 Kang(1993)이 LIFO 선택시점에서의 부정적 주가반응 원인으로써 LIFO로 변경하는 업종은 원자재 가격의 장기적 상승이 우려되는 불리한 상황임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이런 나쁜 소식이 유리한 세금절약 효과를 상쇄할 만큼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제시해 실마리를 풀었다.

이후 LIFO 포기과 보유재고의 청산으로 인해 낮은 재고자산 원가가 한꺼번에 비용 처리됨에 따른 이익의 일시적 증가와 관련된 연구가 이어졌다. Dhaliwal et al.(1994)은 회계보고 인센티브와 세무보고 인센티브 사이의 상충관계가 LIFO 청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연구결과 LIFO 청산은 조세비용이 낮을수록(예를 들면,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비조세비용이 높을수록(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높고, 전기보다 이익이 감소해 회계보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보고와 세무보고 인센티브 간의 상충관계를 살피기 위해 Johnson and Dhaliwal(1988)은 LIFO 적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기업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세비용이 낮고(예를 들면,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비조세비용이 높을수록(예를 들면,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LIFO 포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세무정보가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Amir et al.(1997)은 이연법인세 계정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연법인세 계정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하여 반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평가한 현재가치가 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반면, Holthausen and Watts(2001)는 기존의 세무정보의 가치관련성 연구에 사용된 모형이 계량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회계학적 및 제도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이론 때문에 세무정보와 주가의 관계에 대한 추론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 계정과 주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세무정보를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세무정보와 주가와 상관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가 수행됐다. Frischmann et al.(2008)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 인세자산이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Thomas and Zhang(2007)은 재무제표의 세무정보를 이용해 추정한 과세소득과 미래 증가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회계이익을 통제변수로 사용해 분석한 결과 추정한 과세소득이 미래 증가 수익률에 6개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회계 및 세무처리 방식의 선택에 따른 기간 사이의 소득이전(income shifting)을 주제로 하는 연구도 수행됐다. Guenther(1994)는 법인세율의 단계적인 인하로 인한 기간 사이의 소득이전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당기순이익을 낮추어 보고하며 아울러 기간별로는 세율인하 이후 연도에 보다 높은 이익을 보고하는 소득이전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됐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간 간의 소득이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높은 회계보고 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론됐다. Lopez et al.(1998)은 Guenther(1994)를 확장해 이전에 공격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보인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기간에 소득이전 행위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증거를 밝혔다. 세율변동에 따른 기간 사이의 소득이전에 관한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됐다.

자산처분손익의 실현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됐다. Maydew et al.(1999)에 따르면 회계보고비용이 높고 현금제약이 많을수록 기업은 세금이 면제되는 기업분할(spin-off)보다는 과세대상 자산매각(divestiture)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ford and Berger(1998)는 자산매각에 따른 세금효과가 클수록 기업분할(spin-off)을 선택할 가능성은 증가하지만 회계보고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산처분손익의 실현과 관련된 조세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력이 감소됨을 밝혔다. Bartov(1993)는 이익유연화와 부채계약 등의 회계보고 인센티브와 세무보고 인센티브 사이의 상충관계가 자산의 매각시기 결정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Klassen(1997)은 경영자가 소유한 지분율이 높을수록 자산매각손실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자본시장의 압력이 약해 조세비용 최소화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국내연구로서 최원석(2004)은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이 자산처분손익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조세비용이 높을수록(한계세율이 높은 기업) 자산처분이익을 적게 실현하고 비조세비용이 낮을수록(전기에 비해 당기에 보고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자산처분이익을 많이 실현함을 밝혔다. 아울러 비조세비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 조세비용과 자산처분이익 간의 부(負)의 상관관계가 약해짐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들이 자산처분손익을 활용해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점과 이 과정에서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수행됐다. Beatty and Harris(1999)는 은행을 대상으로, Mikhail(1999)는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에 회계

보고 인센티브와 세무보고 인센티브 사이에 상대적인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조세비용을 줄이려는 세무보고 인센티브는 상장회사보다 비상장회사 의사결정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상장회사의 경우 대리인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계보고이익에 기초해 경영자의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조세최소화 전략으로 인한 회계보고이익 감소에 대한 상장회사의 스트레스가 비상장회사보다 높은 점을 들고 있다.

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및 일치성 관련 연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회계는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요 조달과 기타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구체적 항목에서는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세법은 소득발생 원천지를 엄격히 구분해 과세대상을 정하는데 비해 기업회계는 당해 기업에 귀속하는 손익은 원천지를 가리지 않고 회계이익에 포함시킴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증폭되는 이유는 기업이 회계보고 또는 세무보고 목적으로 공격적 회계처리 또는 세무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익조정을 통해 회계보고이익은 높여 보고하면서도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거나 조세로 인한 현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은 줄여 보고하되 회계보고이익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정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증폭시키는 현상이 발생된다.

기업의 공격적인 회계처리 결과 발생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도 이익조정 관련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회계와 세무의 이익차이(Book Tax Difference : BTD)가 클수록 보고이익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BTD는 이익의 질과 관련된 주요 정보원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BTD가 당기 또는 미래이익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와 BTD의 정보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BTD가 당기 또는 미래이익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BTD가 이익조정, 미래이익의 성장성, 그리고 이익의 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BTD가 이익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다양하다. 이런 유형의 연구에서 경영자 이익조정 측정 대응치로 재량적 발생액 등이 이용된다.

Mills and Newberry(2001)는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높은 경우(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했거나 보너스 기준금액이 높거나 전기에 비해 당기에 이익이 증가한 경우 등)에 BTD가 증가함을 밝혔다. Phillips et al.(2003)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찾아내는데 있어 순이연법인세변동(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인 차이)이 총발생액 또는 재량적인 발생액에 비해 추가적 설명력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손실회피기업을 찾아내는데 있어 순이연법

인세변동은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측정치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주제와 측정치 및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BTD가 미래이익의 성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본 Lev and Nissim(2004)에서는 회계이익 대비 과세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TD가 미래이익의 성장률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BTD가 이익의 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한 Hanlon(2005)에서는 BTD가 큰 기업 및 큰 회계연도는 BTD가 작은 기업 및 작은 회계연도에 비해 이익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서 김영철·김우영·고종권(2011)은 비기대 BTD와 이익의 성장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비기대 영구적차이가 클수록 이익의 성장성이 감소되며, 비기대 일시적차이의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이익의 성장성이 증가하는 반면,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이익의 성장성이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BTD의 정보효과를 시장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도 계속됐다. Joos et al.(2002)은 BTD의 절대 값이 클수록 이익반응계수(ERC)가 낮음을 밝히면서 그 이유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이 드러나는 지표를 시장이 먼저 인식해 회계이익에 대한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Hanlon(2005)은 BTD가 큰 상황에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이유가 이익의 지속성 저하에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그 결과 투자자는 과세소득보다 회계이익이 큰 경우에 이를 위험신호(red flag)로 받아들여 기업의 미래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했다.

Ayers et al.(2010)은 신용평가회사가 BTD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지 검토한 결과 BTD가 증가하면 채권신용등급이 하락함을 밝혔다. 이는 신용평가회사가 BTD에 포함된 이익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채권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Weber(2009)는 재무분석가들이 미래이익 예측에 있어 BTD에 포함된 이익조정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Blaylock et al.(2012)는 일시적 BTD가 이익의 지속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Hanlon(2005)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일시적 BTD가 발생액의 크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익과 발생액의 지속성에 영향이 있으며, BTD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조세 회피를 위한 이익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김철환·전규안(2010)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이 일정 부분 기업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계이익이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본 조달시장에서의 BTD의 정보효과에 대한 연구로 문예영·전병욱·최보람(2011)은 이월결손금과 BTD가 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월결손금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BTD는 증가할수록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신용평점과 재무평점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경·김영철(2012)는 BTD의 변동성과 자본비용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BTD 변동성이 클수록 내재자본비용 및 타인자본비용이 모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성만·김수성(2012)는 BTD가 채권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BTD가 클수록 채권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BTD에 대한 연구 결과는 시장에서 BTD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세무관리 결과로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BTD는 조세회피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은 회계이익보다 경영자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BTD를 통한 추가적 정보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업의 공격적인 세무관리로 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BTD가 증가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기업 성과측정치로서의 추가적 설명력은 감소될 수 있다. Ayers et al.(2009)는 과세소득의 정보효과는 세무관리에 적극적인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회계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을 일치시킬 것인지 또는 차이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논란은 각 나라마다 계속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일치 수단은 우리나라 법인세 법상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같이 회계보고이익을 사용해 곧바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회계시스템으로의 일원화는 납세준용비용을 줄이고 과세관청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별도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국마다 불필요한 차이를 해소해 세무조정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 등 각국에서 다각도로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Guenther et al.(1997)은 과세목적상 현금주의 사용을 금지하고 발생주의 사용을 의무화한 TRA 86 개정 세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일치성을 높인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회계이익 이연현상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됨을 밝혔다. Hanlon et al.(2005)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정보효과 검증을 통해 두 가지 측정치가 모두 추가적 설명력을 지니고 있지만,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장기적 수익률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밝혔다.

회계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일치정도의 국가 간 차이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도 수행됐다. Ali and Hwang(2000)은 회계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 일치성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에서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더 낮음을 보고했는데 이는 회계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 일치성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 간에 회계이익과 자기자본의 장부가치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힌 Hung(2001)의 연구와는 상치되는 결과다.

Atwood et al.(2010)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일치성 수준이 이익의 지속성과 회계이익과 미래현금흐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일치성이 높은 경우에 이익의 지속성이 낮으며 회계이익과 미래현금흐름의 관련성도 약해짐

을 밝혔다. 이는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일치성으로 인해 이익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보고와 세무보고의 일치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Lang et al.(2009)은 일치성이 낮은 국가에서 이익유연화 현상이 보다 뚜렷함을 보고했는데 이는 Leuz et al.(2003)의 일치성과 이익조정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치된다.

다. 법인세비용과 관련한 세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연구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이용해 세후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이익조정을 행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됐다.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법인세비용 정보가 별도로 공시되고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조정되는 이익도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세후이익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전이익을 기초로 하는 경영자 보상계약 등의 영향이 제거된, 순수한 자본시장의 유인에 의한 이익조정 연구에 더욱 적합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Dhaliwal et al.(2004)은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에서 기업이 이익조정을 통하지 않으면 재무분석가 합의에 의한 예측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 회계이익 유효법인세율(GAAP ETR)을 예상보다 낮추는 현상을 밝혀냈다. 이는 경영자가 재무분석가의 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비용을 줄인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인세비용 감소가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한 이익조정의 영향이 아닌 공격적 세무관리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Cook et al.(2008)은 Dhaliwal et al.(2004)의 연구결과가 법인세비용을 조정한 이익조정뿐 아니라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밝혔다.

법인세비용 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이외에도 이연법인세 계상을 통한 이익조정도 가능하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하나의 대안이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차감계정으로써 미래의 과세소득 및 실현시기 추정에 대한 경영자 기대를 기초로 산정한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이익조정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감사인의 검증이 어려워 경영자가 안심하고 재량권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Miller and Skinner(1998)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를 감사인의 검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실제보다 낮추어 계상할 경우 법인세비용을 줄여 회계보고이익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증거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이 없다. Miller and Skinner(1998)와 Bauman et al.(2001)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이용해 이익조정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약한 수준의 증거는 확인했다. 그러나 Schrand and Wong(2003)과 Frank and Rego(2006)는 기업이 재무분석가 합의에 의한 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이용하는 실증적 증거를 밝혔다. 국내의 다수 실증연구 결과도 이익조정 증거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제 관련 연구의 흐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세무와 관련된 연구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재환·정도진(2009)은 현행 법인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과세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국제회계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도 검토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과세시스템 변화의 공통점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극소화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역시 국내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회계기준에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인 과세시스템보다는 현행의 회계기준에 준의존적(Quasi-dependent)인 과세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영한·최원석(2009)은 금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있어 다양한 재무회계 처리방법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금융업 중에서 은행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은행업 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대손충당금, 자산과 부채의 분류기준 변동, 외화환산, 금융자산의 양도와 자산유동화, 고객중심제도(마일리지, 포인트제도) 및 이연대출 부대손익의 인식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의 변화로 인한 대손충당금 전입의 손금인정액 차이발생, 국제회계기준상 금융부채의 자본과 부채의 분류기준 명확화로 인한 신종자본증권과 상환우선주의 자본과 부채의 재분류 가능성 및 관련 이자비용과 배당금의 손금인정 문제가 금액적으로 과세소득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재무회계분야 차이 분석뿐만 아니라 세법 및 상법 등 각종 법령차원의 준비 및 기업 회계정보시스템 및 지배구조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한(2007)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 확대에 세법과의 괴리가 확대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법인에 제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회계기준 차등적용으로 인한 법인 간의 세금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김문철·이준규(2008)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차이 조정을 위한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산 조정제도로 인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산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또 국제회계기준 준수를 위해 세무상 손금산입 혜택을 포기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태섭·구자은·최기호(2012)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을 단기, 중·장기 및 장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단기적 분리방안으로 현행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가려내 이들 조항의 개정 필요성

을 검토했다. 중·장기 분리방안으로는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큰 일부 주요항목에 대해 양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 분리방안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장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심태섭(2011)은 K-IFRS 도입에 따른 2010년 세법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감가상각 및 대손충당금의 경우 IFRS 관련규정의 개정을 미리 예상하고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임시방편적 조치가 충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한 과세소득 이연 관련 사항은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조용언·이정란(2009)은 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자산평가에 있어서 공정가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방법과 금액 및 변동가능성의 확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원가모형과 채평가모형 중의 선택, 자산손상처리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에 대한 균등상각 대신에 손상차손 계상도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승준·박종일·정영기·최관(2010)은 상장법인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화에 따라 비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할 회계기준의 적합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인회계사 등 설문조사대상자 중의 59.8%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이원화를 지지했으며 과세관청과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 응답자는 40% 정도가 이원화를 지지했다. 이원화를 가정할 경우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대안으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가 52.5%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Ⅲ. 국제회계기준 관련 세법 개정 및 관련 연구의 방향

1. 도입 초기의 개정사항

국제회계기준이 상장회사에 대해 전면 의무화되는 2011년부터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마찰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학계, 기업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정기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개정방향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금부담과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는데 두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 계산 방식의 틀은 손대지 않고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임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입 첫 년도에 미진한 사항들은 2011년과 2012년 개정안에서 계속 수정됐다.

〈표 1〉 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개정사항

항 목	IFRS 도입시 영향	개정 방향
감가상각비	• 내용연수증가, 상각방법 변경(정률법 →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세부담 증가	• '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하여 IFRS 도입 이전 수준으로 추가 손금 산입 허용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비용 계상이 금지돼 세부담 증가	• IFRS 도입 보험사에 대하여 회계상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요건 강화로 대손충당금 비용 계상액이 감소하여 세부담 증가	• 대손충당금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 '13년까지 납부 유예('13년에 IFRS가 개정되어 대손충당금이 현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비용계상이 금지돼 세부담 증가	• IFRS 도입 보증사에 대해 회계상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장기할부거래 수익	• 장기할부거래 수익을 상품 인도시점에 인식(기존에는 할부금 회수시점에 나누어 인식)	• 회계상 인도시점에 인식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회수시점에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건설공사 수익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공사 수익을 건축물 공사기간 중 인식(기존에는 건축물 인도시점에 인식)	• 회계상 공사기간 중 인식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인도시점에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외화환산	•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돼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 작성 가능하나 세무상 처리 방법 없음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3가지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 허용
해외사업장 환산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 세법은 K-GAAP 방식 준용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IFRS 방식을 포함 3가지 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 허용)
은행 평가손익	• 은행의 평가손익 인식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모든 외화자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으로 축소	• 평가손익 인식 대상을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모든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자산)
리스회계	• IFRS에서 리스 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은 K-GAAP 분류 준용	• 세법의 별도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 기준을 준용
건설자금이자	• 사업용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강제하나 세법은 특정차입금 이자만 원가 가산 인정	• 일반차입금 이자도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분과 정책평가보고서 p.4에서 발췌해 일부 수정한 것임)

2. 후속연도의 개정사항

국제회계기준의 상장법인 적용 의무화 첫 해였던 2011년에는 당해연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 및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과 기타 전년도 조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한 추가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결납세제도 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더라도 적용률이 더 높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기타 개정사항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평가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둘째, 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거래에서 이를 매각거래로 보고 처리하는 방식과 차입거래로 보고 선택하는 방식 중에서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경감시켰다. 셋째, 보험회사의 경우 결산을 통해 회계기준상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세무조정 부담을 줄였다.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감가상각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세법상 기준내용연수까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허용됨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준내용연수가 개정 전에는 5년, 8년, 10년, 12년, 20년의 5단계로 구분했으나 4년, 6년, 14년, 16년을 추가해 9단계로 보다 세분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재조정도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세법개정은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신고조정에 의해 과세이연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인해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괴리가 확대되고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기업회계와 별도로 법인세 회계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의 2장부제(two-book system)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3. 회계기준 변동 관련 연구주제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고 후입선출법과 정률법 등 오랫동안 적용해 오던 회계처리 방법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의 완화를 위한 신고조정을 확대했다. 그 결과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와의 괴리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법인세제 정비는 근본적 대책보다는 임기응변적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개정을 정비하더라도 세금부담 증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부담과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기업회계 및 법인세 부담과 관련된 기업별 자료가 축적되기 전에는 분석적 접근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다가

2011년부터 최소 2년의 자료가 확보되면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에 관한 연구도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은 1994년에 12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대폭적 변화가 이뤄졌다. 당시 관련 세법개정의 핵심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세법규정과 다른 경우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의 채택이다. 그러나 1998년 12월 법인세법이 다시 개정돼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우선 적용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는 1994년 이전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positive system)으로 환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조항의 차이는 갈수록 복잡하게 누적되고 이를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특히 법인의 합병과 분할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세무장부를 유지하는 장부 이원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이원화 방안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수행돼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실무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후입선출법과 관련해 Section 472(c)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치요건(Financial Reporting Conformity Requirements)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선택한 회계원칙이나 수인인식 및 비용계상은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세법 제정 및 개정도 기업회계를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공정가치회계에 기반을 둔 국제회계기준과 역사적 원가의 장부가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인세회계가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다.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에 의한 재평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인세회계 기록유지가 매우 복잡해진다.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이원화를 검토한다면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시스템에 의하면 법인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이 허용하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며,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고 과거의 부인액이 없으면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를 세법에서도 인정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지만 과거 부인액이 있으면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에 시인부족액 이내의 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를 먼저 확정해야 세법상 손금인정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세법상 감가상각의 차이에 대한 기록이 계속 유지돼야 차기 이후의 세법상 감가상각 손금인정 범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 기록이 매우 복잡해진다. 세무조정

상의 혼잡으로 인해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의 정확한 운영도 어렵다.

미국식 이원화 방식에 의하면 세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이원화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전이라도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선 도입하고 세법상 감가상각 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그 차이에 대해 미국의 Schedule M-1과 M-3와 유사한 기업회계와 세법상 감가상각비 차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화 방식의 전면 도입에 앞서 사례연구를 통해 운영방식을 미리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돼야 할 것이다.

IV. 국제회계기준 관련 추가연구 방향

1. 법인세비용 및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법 규정 개정사항에 관해서 제Ⅲ장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조정 방식의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세액 급증은 완화시켰으나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에 따라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과 이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변화로 인한 법인세비용의 변동과 관련된 연구가 다각도로 수행돼야 한다.

실적자료가 축적되기 전에는 새로 규정된 신고조정 사례를 설정해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추후 기업별 회계자료 축적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의 변화와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해 수행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유효법인세율은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이영·조명환(2010)은 법인세액과 세전이익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세전이익의 계수 값을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치로 제시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명목법인세율이 나타내지 못하는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의 효과를 측정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효법인세율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조세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실증적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2. 세법, 상법 및 기타 법령과의 조화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조정 문제는 제Ⅲ장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다. 회계기준 및 세법 운영과 긴밀한 관계로 얽혀 있는 법규로는 상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

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조정에 있어서 다른 관련 법률과의 조화방안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합병 및 분할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의 차이로 인해서 영업권과 합병차익의 구분상 어려움에 따른 세무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도 시급하다.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중심 기조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과도 충돌할 소지가 많다. 상법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본과 이익을 구분해 이익으로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금 반환 등을 통해 채권자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많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보유 주식 및 유형자산 재평가에 의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논란거리다. 상법 제462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은 제외시키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자본항목으로 계산되는 미실현이익 부분과 관련된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적용과 관련한 연구가 시급하다.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돼야 한다.

재평가차액 이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이를 세법과 어떻게 조화할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돼야 한다. 상장회사와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금융투자회사와 펀드 등 특수한 회계주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이에 따른 세무회계 처리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수행돼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상법상 결산서를 정함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지도 시급한 연구과제다. 특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할 경우 개별기업과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분할하고 법인세 기간배분회계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돼야 한다.

3.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조세문제 및 도입 경험 활용 방안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됨에 따라 생산시설을 국제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중간 부품의 국가 간 이전도 증가되는 추세다. 기업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계열사 간의 부품이동에 따른 이전가격(transfer price) 책정을 통해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계열사의 이익이 늘리는 세무관리 기법을 사용할 유인이 있다. 특히 조세피난처의 활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세금천국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세율이 아주 낮은 나라를

의미하지만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더 유리한 상대국을 지칭하기도 한다. 고세율 세금지옥 국가에서는 과세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려는 사업자와 이를 막으려는 과세당국의 다툼이 치열하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최근 국제거래 감시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약화된 법인세율 경쟁력을 감안한 것이다.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대해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 집중한 세무조사가 장기간 진행됐던 것이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 각국에 광범위한 사업조직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한국보다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낮은 이전가격으로 제품을 넘기면 한국 본사 이익은 줄고 해외 자회사 이익은 늘어난다. 결국 저세율 국가 자회사의 낮은 세율 때문에 전사적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해외거래 실적이 많은 선도적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는 다른 기업의 공격적 세무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포석인 것이다.

이전가격의 정당성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등이 적용되지만 다른 나라에 분산돼 있는 계열사 간의 부품 이전가격의 경우에는 원가가산법 또는 이익분할법이 보다 적절하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회계수치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회계기준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국제회계기준 사용이 이전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또는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소재국인 같이 IFRS를 채택하는 경우 이전가격 산정에서 어떤 유리점과 불리점이 있는지도 연구과제다.

최근 중국 등에서 부품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여되고 있다. 생산시설 복귀에 따른 회계처리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이 미치는 영향과 세금부담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해 정책적 제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이 우수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IFRS 시스템 구축 경험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및 반덤핑 관세 조사 관련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제공함으로써 수익모델 구축하는 사례연구도 시도되어야 한다.

4. FTA 및 원산지 증명과 관련 사항

우리나라의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실적은 미국 및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아세안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FTA의 핵심은 수출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EU와의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는 양허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모든 FT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수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부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해야 하면 부품 공급 협력업체에서의 입증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FTA에서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한 수출업자에 대해서만 특혜관세가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협정 발효 이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업자’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원가회계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세청 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 EU 국가의 경우 유럽연합내의 거래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인증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준비부족으로 정당한 혜택을 놓칠 위험이 크다.

유럽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과 관련된 편의가 증대될 것이다. 원산지 인증시스템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구도 수행돼야 한다. 미국 회계법인은 관세 관련 서비스 매출액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대형 회계법인이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회계법인 FTA원산지 증명에 ‘먹거리’, 매일경제 2011년 3월 3일자 기사). 이와 관련해 회계법인의 FTA 업무영역 확대 사례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돼야 한다.

V. 맺음말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이 2011년부터 개시됨에 따라 법인세회계도 증대한 변화를 맞았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큰 방향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수행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축적돼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는 후입선출법 적용시 일치요건 이외에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복잡해지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하는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운용도 매우 어렵다.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회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법인세회계와의 괴리가 종전보다 심각해졌다. 따라서 세무조정사항이 훨씬 늘어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유도법에 의한 세무조정 방식을 바꿔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 이원화는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사례 중심 연구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재무회계와 연관된 세무관련 분야의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회계의 영향을 검토하고 법인세법 등 관련 제도의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를 분석했으며, 나아가 향후 필요한 추가 연구를 제시했다.

재무회계와 연관된 세무관련 분야의 연구흐름은 크게 인센티브 상충관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및 일치성, 법인세비용 관련 이익조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인센티브 상충관계는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세무보고이익을 줄이는 과정에서 회계보고이익의 감소가 수반되는 경우 나타나며,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분야에서도 오랜 연구 대상이다. 둘째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차이로써 기업이익의 질 및 성장성에 대한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비용 관련 이익조정은 직접적으로 법인세비용을 조정하거나 법인세회계를 통해 이연법인세를 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익조정의 유인을 분석하거나 증거를 찾는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세법규정 개정작업이 2010년부터 해마다 진행됐다. 국제회계기준과의 조정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이 법인세 산출세액과 회계상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및 실증적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돼야 한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이 유효법인세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조정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수행돼야 한다. 특히 상법 개정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시킴에 따른 영향과 이와 관련한 법인세 기간배분회계도 새로운 연구과제다. 아울러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조세와 FTA 운영상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분야에 있어 국내외 연구실적을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추가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세무 연구자들의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규제기관이 세법 및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1. “2010년 정책평가보고서(세제분과)”. 1-457.
 _____. 2012. “2011년 정책평가보고서(세제분과)”. 1-289.
 _____. 2013. “2012년 정책평가보고서(세제분과)”, 1-301.
- 김문철 · 이준규.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155-185.
- 김영철 · 김우영 · 고종권. 2011.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이익성장성”.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 107-140.
- 김철환 · 전규안. 2010.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익의 가치관련성”.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77-108.
- 문예영 · 전병옥 · 최보람. 2011. “세무정보가 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 245-277.
- 박정우. 2004.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220
- 박재환 · 정도진. 200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 293-314.
- 심태섭 · 구자은 · 최기호. 2012. “국제회계기준시대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 분리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 309-341.
- 심태섭. 2011. “IFRS도입과 관련된 2010년 세제개편의 평가”.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 45-87.
- 윤성만 · 김수성. 201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채권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357-384.
- 윤승준 · 박종일 · 정영기 · 최관. 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설문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 9-44.
- 이만우 · 정석우 · 정규언. 2003. “회계관련법규의 조화방안 :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 61-94.
- 이영 · 조명환. 2010.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이영한. 200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3권 제3호 : 189-228.
- 이영한 · 최원석. 2009.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6권 제4호 : 9-36.
- 이윤경 · 김영철. 2012.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차이의 변동성과 자본비용”.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117-140.
- 정재호 · 이홍식. 2010.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조용언 · 이정란. 2009. “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 27-74.
- 주영섭. 2012. “FTA 원산지 인증제도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상장협연구 제65호. 2012년 춘계호 : 74-93.
- 최기호. 2012.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Alford, A., and Berger, P. 1998. The role of taxes, financial reporting, and other market imperfections in structuring divisive reorganizations. Working paper,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 Ali, A., and Hwang, L. 2000. Country-specific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reporting and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dat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 : 1-21.
- Amir, E., Kirschenheiter, M., and Willard, K. 1997. The valuation of deferred tax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4 : 597-622.
- Atwood, T., Drake, M., and Myers, L. 2010. Book-tax conformity, earnings persistenc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and cash flow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11-125.
- Ayers, B., Jiang, X., and Laplante, S. 2009. Taxable income as a performance measure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and earnings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 : 15-54.
- _____, Laplante, S., and McGuire, S. 2010. Credit rankings and taxes : the effect of book/tax differences on ratings chang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7 : 359-402.
- Ball, R. 1972. Changes in accounting techniques and stock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0 (Suppl.) : 1-38.
- Balsam, S., and Ryan, D. 1996. Response to tax law changes involving the deductibility of executive compensation : a model explaining corporate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8 (Suppl.) : 1-2.
- Bartov, E. 1993. The timing of asset sales and earnings manipulation. *The Accounting Review* 68 (4) : 840-855.
- Bauman, C., Bauman, M., and Halsey, R. 2001. Do firms use the deferred tax asset valuation allowance to manage earning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Suppl.) : 27-48.
- Beatty, A., and Harris, D. 1999. The effects of taxes, agency costs and information asymmetry on earnings management :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firm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4 : 299-326.
- _____, Berger, P., and Magliolo, J. 1995a. Motives for forming research & development financing organiz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 (2&3) : 411-442.

- Blaylock, B., Shelvin, T., and Wilson, R. 2012. Tax avoidance, large positive temporary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persistence. *The Accounting Review* 87 (1) : 91-120.
- Collins, J., Shackelford, D., 1995. Corporate domicile an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 the cases of Canada,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 (1) : 55-83.
- Cook, K., Huston, R., and Omer, T. 2008. Earnings management through effective tax rates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investment an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 : 447-471.
- Dhaliwal, D., Frankel, M., and Trezevant, R. 1994. The taxable and book income motivations for a LIFO layer liquid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 (2) : 278-289.
- _____, Erickson, M., and Heitzman, S. 2004a. The effect of seller taxes on acquisition prices : evidence from purchases of taxable and tax-exempt hospital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6 : 1-23.
- _____, Gleason, C., and Mills, L. 2004b. Last-chance earnings management : using the tax expense to meet analysts' forecas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1 : 431-459.
- Engel, E., Erickson, M., and Maydew, E. 1999. Debt-equity hybrid securit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2) : 249-274.
- Frank, M., and Rego, S. 2006. Do managers use the valuation allowance account to manage earnings around certain earnings target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8 : 43-65.
- Frischmann, P., Shelvin, T., and Wilson, R. 2008. Economic consequences of increasing the conformity in accounting for uncertain tax benef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6 : 261-278.
- Graham, J., Raedy, J., and Shackelford, D. 2012. Research in accounting for income tax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3 : 412-434.
- Guenther, D. 1994.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Accounting Review* 69 (1) : 230-243.
- _____, Maydew, E., and Nutter, S. 1997. Financial reporting, tax costs, and book-tax conform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3 : 225-248.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 : 137-166.
- _____, and Shelvin, T. 2005. Book-tax conformity for corporate income : an introduction to the issues. *Tax Policy and the Economy* 19 : 101-13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_____, Heitzman, S.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27-178.
- Holthausen, R., and Watts, R. 2001. The relevance of the value-relevance literature for financial

- accounting standard set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 3–75.
- Hung, M. 2001. Accounting standards and value relevance of financial statements : an internation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30 : 401–420.
- Hunt, A., Moyer, S. E., and Shevlin, T. 1996. Managing Interacting Accounting Measures to Meet Multiple Objectives : A Study of LIFO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1 : 339–374.
- Johnson, W., and Dhaliwal, D. 1988. LIFO abandon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6 (2) : 236–272.
- Joos, P., Pratt, J., and Young, S. 2000. Book–tax differences and the pricing of earnings. Working Pap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Kang, S. 1993.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ock price effects of LIFO tax benefi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1) : 50–61.
- Klassen, K. 1997.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2 (3) : 455–474.
- Lang, M., Lins, K., and Maffett, M. 2009. Transparency, liquidity, and valuation : international evide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versity of Utah.
- Leuz, C., Nanda, D., and Wysocki, P.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9 : 53–72.
- Lev, B., and Nissim, D. 2004. Taxable income, future earnings, and equity values. *The Accounting Review* 79 : 1039–1074.
- Lopez, T., Regier, P., and Lee, T. 1998. Identifying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around TRA 86 as a function of prior tax–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2) : 37–56.
- Maydew, E., Schipper, K., and Vincent, L. 1999. The impact of taxes on the choice of divestiture metho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8 : 117–150.
- Mikhail, M. 1999. Coordination of earnings, regulatory capital and taxes in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Working paper, MIT, Cambridge, MA.
- Miller, G., and Skinner, D. 1998. Determinants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109. *The Accounting Review* 73 (2) : 213–233.
- Mills, L. 1998, Book–tax Differenc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8 : 343–356.
- Mills, L., and Newberry, K.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 : Public and Private Firm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 1–19.

- Phillips, J. 2003. Corporate tax—planning effectiveness : the role of compensation—based incentives. *The Accounting Review* 78 : 847—874.
- _____, Pincus, M, and Rego, S.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 491—521.
- Ricks, W. 1986. Firm size effect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excess returns and LIFO tax sav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1) : 206—216.
- Scholes, M., Wolfson, M., Erickson, M., Maydew, E. and Shevlin T. 2005.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3rd Edition. Prentice—Hall, Inc., Engelwood Cliffs, NJ.
- Schrand, C., and Wong, F. 2003.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 109.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 : 579—611.
- Shackelford, D., and Shevlin, T. 2001. Empirical tax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 321—387.
- Sunder, S. 1973.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changes and stock prices : problems of measurement and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1 (Suppl.) : 1—45.
- Thomas, J., and Zhang, F. 2007. Tax Income Momentum. Yale University Working Paper.
- Weber, D. 2009. Do analysts and investors fully appreciate the implications of book—tax differences for future earning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

Review of Tax Accounting Research Related to the Adoption of IFRS in Korea

Manwoo Lee*

〈Abstract〉

The adoption of IFRS was mad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effective from 2011, and this adoption has created a paradigm shif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As the accounting rules used for book keeping of income tax accounting were replaced by IFRS, a change in research trend for tax accounting related research is anticipated.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financial accounting—and tax accounting—related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the US. Further, the effects of adopting IFRS on research trends, along with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will be provided.

Fair value accounting, the core of IFRS, is likely to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which calls for further research on adjustment of the gap. In 2010, in order to minimize any conflict that may arise from the adoption of IFRS, various measures, such as discontinuance of LIFO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have been implemented. Such tax reform measures should be undertaken whenever necessary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nature of IFRS, the gap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ends to widen. Thu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seek ways to minimize tax burden, and effectively operate income tax allocation with the use of two-book system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Further, any income tax allocation problem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IFRS, as well as a remedy for the problem should be dealt with.

The effects of implementing IFRS on the calculation of income tax expense and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ways to create a smooth alignment between IFR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ax law, business law, and stock exchange law should be studied in depth. As globalization of economy gets accelerated, other issues related to IFRS, such as transfer pricing taxation and international taxation should be actively researched. Furthermore, for the implementation of FTA, issues related to certificate of origin should be addressed in further research.

〈Key words〉 IFRS, Financial Accounting, Tax Accounting, Corporate Income Tax Accounting, Income Tax Allocation

*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leemm@korea.ac.kr, 02-3290-1927